

#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定款

改定	1956年 4月 20日
"	1961年 4月 23日
"	1962年 1月 28日
"	1963年 1月 20日
"	1965年 2月 13日
"	1968年 5月 28日

## 第一章 總 則

- 第1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라 稱한다.
-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內에 둔다.
- 第3條 本會는 全國의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 圖書館, 特殊圖書館, 其他 讀書施設의 提携下에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韓國의 文化向上에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二章 事 業

- 第4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의 事業을 한다.

  1. 圖書館의 管理, 運營, 技術에 관한 調査研究 및 그 實施 促進
  2. 機關誌 및 圖書館과 讀書에 관한 資料의 編刊
  3. 圖書館 職員의 教育 및 地位向上
  4. 圖書館의 普及 및 設立經營의 指導
  5. 良書의 推薦 選定 및 그 普及
  6. 讀書運動의 推進 및 指導
  7. 圖書館用品의 規格化 및 그 普及
  8. 圖書館關係 資料室의 設置
  9. 各國의 圖書館團體 및 關係機關과의 連絡 提携
  10.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 第三章 會 員

- 第5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1. 團體會員…圖書館, 學校, 其他讀書施設을 가진 團體
  2. 個人會員…圖書館, 其他 讀書施設의 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者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 但, 「圖書館學을 履修한 者」란 圖書館學 18學點 以上 取得한 者를 말한다.
  3. 贊助會員…本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個人 또는 團體
  4. 名譽會員…本會에 貢獻이 있는 人士로서 理事會가 推薦하는 者

第6條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를 申請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 本會의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但,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理事會에서 定하며 名譽會員에게는 會費를 받지 아니 한다.

第8條 本會의 會員은 脫退 및 除名에 의하여 그 資格을喪失한다.

但, 除名處分은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은 者 또는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者에 대하여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行한다.

## 第四章 任 員

第9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理事 35名以內(專務理事 1名, 常務理事 9名以內)
3. 監事 2名
4. 評議員 90名以上 100名以內

第10條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括한다.
2.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여 第20條의 事項을 審議執行한다.
3. 專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여 會務를 總理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그 任務를 代行한다.
4. 常務理事는 常務理事會를 構成하고 理事會의 委任을 받아 會務를 審議處理한다.
5.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每年 2回以上 監查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6. 評議員은 評議員會를 構成하여 第18條의 事項을 議決한다.

第11條 本會 任員의 選舉方法은 다음과 같다.

1. 理事, 監事는 團體會員 및 個人會員中에서 評議員會가 이를 選出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事務局長과 第28條에 의한 地區協議會會長은 當然 職理事가 된다.
2. 會長 專務理事 常務理事는 理事會가 理事中에서 이를 互選하고 常務理事는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 (1) 理事中에서 第26條 規定에 의한 各部會別로 1名式
- (2) 個人理事 若干名
- (3) 事務局長
- 3. 評議員은 團體會員 및 個人會員 中에서 總會가 이를 選出하되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道別로 會員數에 比例하여 館種別로 選出한다.  
但, 市·道別 評議員數는 4人 未滿으로는 할 수 없다.
- 4. 任員의 就解任은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2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但, 任員中 缺員이 생길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여 補任者の 任期는 前任者の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3條 本會의 任員은 任期滿了時라도 後任者가 決定될 때까지 그 任務를 執行한다.

## 第五章 會 議

第14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 評議員會, 理事會, 常務理事會의 4種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5條 本會의 總會는 團體會員의 代表者 및 個人會員으로 構成하고 會員 5分之 1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 年度初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할 수 있다.
  - (1) 理事會 또는 評議員會에서 議決할 때
  - (2) 監事가 連署로 要求할 때
  - (3) 會員 10分之 1 이상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 때

第16條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 定해진 事項
2. 事業報告
3. 豊算, 決算의 報告
4. 定款의 變更
5. 其他 重要한 議決

第17條 本會의 評議員會는 評議員 3分之 1 以上的 出席으로 成立한다.

1. 定期評議員會는 每年 年度初에 開催한다.
2. 臨時評議員會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할 수 있다.
  - (1) 理事會에서 議決 要求할 때
  - (2) 評議員 5分之 1 이상의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 때

第18條 評議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서 定해진 任員의 選舉
2. 事業報告의 審議
3. 豊算, 決算의 承認
4. 其他 必要한 事項의 議決

第19條 本會의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召集하여 理事의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한다.

1. 會長이 必要를 認定할 때
2. 理事 10名以上이 要求할 때  
但, 緊急을 要할 때는 會長이 書面 또는 口頭로써 理事의 意見을 얻어 理事會에 代할 수 있다.

第19條2 本會의 常務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召集하여 常務理事 3分之 2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理事會에서 議決할 때

第20條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 定해진 事項
2. 總會 및 評議員會에서 議決한 事項의 審議 執行
3. 定款의 變更案 및 其他 總會에 附議한 案件의 審議
4. 其他 重要한 會務의 審議 執行

第21條 本會 諸會議의 議事는 出席者 過半數로써 決定하여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缺席會員은 出席會員에게 表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 第六章 事 務 局

第22條 本會는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設置하고 事務局長 1名, 幹事 若干名, 書記 若干名을 둘 수 있다.

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事務局長의 任免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事務局 處務規程은 別途로 理事會에서 定한다.

## 第七章 財 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費
2. 寄附金 또는 贊助金
3. 基本資產收入金
4. 事業收入金
5. 其他收入金

第24條 本會의 財政上 緊急을 要할 때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豊算의 變更를 할 수 있다.

但, 次期評議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와 같다.

## 第八章 部會 및 委員會

第26條 本會에 다음의 部會를 둔다.

1. 公共圖書館部會
3. 大學圖書館部會
3. 學校圖書館部會
4. 特殊圖書館部會
5. 其他 必要한 部會

第27條 本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必要한 委員會를 둘 수 있다.

## 第九章 地區協議會

第28條 本會에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各道別 地區協議會를 둘 수 있다.

第29條 地區協議會에 事業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 韓國圖書館協會 表彰規程

**第1條 (目的)** 本規程은 韓國圖書館事業發展에 功績이 顯著한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하여 그 功勞를 讚揚하고 아울러 今後의 圖書館事業發展에 대한 意慾을 鼓吹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表彰의 種類)** 表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功績賞
2. 研究賞
3. 勤績賞

**第3條 (功績賞)** 功績賞은 韓國圖書館事業development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한다.

**第4條 (研究賞)** 研究賞은 韓國圖書館事業development에 顯著하게 寄與할 수 있는 研究業績을 具한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한다.

**第5條 (勤績賞)** 勤績賞은 20年 以上 圖書館事業에 從事하여 韓國圖書館發展에 寄與한 個人에게 每 5年마다 表彰한다.

**第6條 (受賞者的 選定)**

1. 各地區協議會會長 및 各部會長은 每年 9月末日까지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理事會에 推薦한다.  
履歷書 1通  
學歷 및 經歷證明書 1通  
地區協議會會長 및 各部會長의 推薦書 1通  
但, 地區協議會가 結成되지 않은 地區는 專門委員會委員長이 推薦한다.
2. 理事會는 要請된 推薦書를 表彰審查委員會의 審查를 거쳐 決定한다.

但, 補助金을 받고자 하는 地區事業은 本會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十章 解散 其他

第30條 本會를 解散코자 할 때는 總會의 議決과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1條 本會를 解散할 때의 殘餘財產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本會와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團體에 寄附한다.

第32條 本定款은 總會의 議決이 아니면 變更할 수 없다.

第33條 本定款의 施行上 必要한 規定 및 細則은 別途로 理事會에서 定할 수 있다.

## 附 則

本定款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 부터 施行한다.

## 第7條 (表彰審查委員會)

1. 本規程에 의한 施賞業務을公正히 違行하기 위하여 表彰審查委員會를 둔다.
2. 表彰審查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委員長 1人  
委員 10人以內
3.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된다.
4. 委員은 專門委員會委員長, 事務局長, 各部會長(公共, 大學, 學校, 特殊圖書館部會에 限함), 大學의 圖書館學科長中 2人 및 常務理事中 1人을 委員長이 推薦하여 會長이 委嘱한다.
5. 表彰審查委員會는 功績調書를 作成하여 審查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 第8條 (施賞方法과 副賞)

1. 賞狀과 賞金 또는 賞品을 授與한다.
2. 賞金 또는 賞品의 金額은 豫算範圍內에서 따로 定한다.

**第9條 (表彰의 時期)** 表彰은 總會에서 行함을 原則으로 하되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隨時 이를 行한다.

**第10條** 本規程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事務局 内規로서 따로 定한다.

## 附 則

本規程은 1968年 6月 21日부터 施行한다.